

사회II·피플

일제징용 소송 무더기 기각

SF 연방지법 “피해자 배상 거주법은 위헌”

주·연방 항소법원서 판가름 날듯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은 19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캘리포니아주 법은 '위헌적'이라며 한인·중국인·필리핀 피해자가 낸 소송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본 위커 연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는 캘리포니아주법(99년 제정된 일본강제노동손해배상특례법)이 “외교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한인 과 중국인 징용피해자들이 미쓰비시와 가시마 등 일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 7건을 기각했다.

위커 판사는 또 필리핀 피해자 4

명이 낸 소송도 필리핀이 1951년 샌프란시스코 미·일강화조약 체결 당시국이기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커 판사의 판결은 지난 15일 LA 민사지법의 피터 리트만 판사가 일본 다이헤이요 시멘트의 한인 정재원(79)씨 소송 기각요청을 거부한 것과는 대조된다.

정씨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99년 10월 미주 한인으로서 처음으로 배상청구 집단소송을 냈으며 리트만 판사는 한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주법에 의거해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미일 정부의

정치외교관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었다.

이에 대해 정씨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배리 피셔 변호사는 “결국 징용피해자들의 권리는 주 및 연방 항소법원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 변호인 한태호 변호사는 “연방 북부지원 판결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라며 “주 법원의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커 판사의 판결이 정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커 판사는 작년 9월에도 전쟁 포로 미군의 징용피해소송을 비슷한 이유로 기각한 바 있으며 이번

에 기각된 소송은 한국과 중국 등 강화조약 미체결국의 징용피해자와 체결국의 민간인 피해자(필리핀인)가 제기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원은 최재식(76·워싱턴주 거주) 등 한인 5명을 포함해 중국, 대만, 필리핀 등 다국적 징용피해자들이 미국내 여러 연방법원에 제기한 집단소송 20여건을 일괄해 다루고 있다.

미 정부와 연방법원은 유대인 집단학살(홀로코스트) 소송 때와는 달리 일 기업을 상대로 한 징용, 위안부 피해소송에서 일방적으로 일본측을 두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